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·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등에 배출권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함(안 제47조의3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한 석 현)